

# 북한의 임업 ①

서승진 / 산림청

북한의 임업정보를 입수하기란 매우 어려운것이 우리의 현실여건이다. 한민족 한반도의 국토이지만 분단으로 인하여 서로의 실상을 잘 모르는 가운데 임업정보를 알기란 차라리 멀고 먼 외국의 임업정보를 알기보다 더 어려운것이 현실정이다.

이제 언젠가는 통일이 되어야하고 그 기운은 최근년에 갑자기 화해 무드가 조성되어가고 있음으로 북한의 임업 실상을 미리미리 연구하여 두고챙겨보는것은 금후 통일을 대비한 매우 유익한 일이 아닌가 여겨진다.

본지는 그동안 북한의 임업에 대하여 임업연구원 유병일(재 일본) 연구관이 91년 9월호(통권 제68호)에 “북한의 임업과 산림개황”에 대하여 논술한바 있고 산림청 서승진 과장이 ’93년 3, 4월호에 “북한의 임정 개황”에 대하여 기술한바 있다.

다음은 서승진 과장이 농촌경제연구원에 파견연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동안 북한의 임업에 대하여 총체적 연구를 한 내용중에서 앞으로 몇차례에 나누어 발췌 보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필자에게 감사를 드린다. —— 편집인

## 1. 북한의 林業行政組織

북한은 해방 다음해인 1946년부터 산림 행정조직을 갖추기 시작한다. 북한은 모든 산림과 목재관련산업을 국유화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방대한 임업행정 조직을 초기부터 유지해오고 있다.

현재의 북한 임업행정조직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알려진 것 밖에 없다. 그러나 60년대까지의 조직에 대해서는 비교적 구체적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초기의 조직이 명칭의 변경, 조직의 확대 또는 축소 등의 변동은 있었겠으나 대체적으로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현재의 북한 임업행정조직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우선 초기의 임업행정조직을 비롯한 1980년 이전까지의 변천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1980년 이후의 현조직에 대하여 언급코자 한다.

## 가. 初期 林業行政組織 및 變遷內容

(1980년 以前까지)

북한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6월 4일 자로 산림을 부통·조성시킬 대책을 강구 할 목적으로 「임야관리경영결정서」(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30호)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산림법에 해당하는 「임야관리령」의 제정과 임야관리경영기관의 실제 승인에 관한 사항이었다.

「임야관리경영결정서」에 의하면 중앙 농림국 奉下에 산림부를 설치하고 각 道에는 산림서를, 각 郡에는 산림지서를, 각 面에는 산림분서를, 각 洞 / 里에는 임야관리위원회를 두어 국유림 및 민유림 관리와 營林事業을 담당하게 하였다. 각 郡에 설치한 산림지서는 총 89개로서 道別 分布數는 함경북도가 16개소, 함경남도가 21개소, 강원도가 12개소, 평안북도가 20개소, 평안남도가 10개소, 황해도가 10개소이었다.

이 당시 中央單位 산림행정기구인 농림국 산하 산림부에는 임정과, 조림과, 임산과, 商務課를 두었으며, 각 道에 설치된 산림부서에는 임정과와 임산과를 두었다. 이 당시 산림부의 소관업무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임야관리경영에 관한 법령을 제정 실시할 것.
- 2) 임야관리경영사업을 계획하여 산림서의 실행을 지도감독 또는 협조할 것.
- 3) 임산물의 이용허가와 민유림경영을 지도감독할 것.
- 4) 임산물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교역의 원활을 기할 것.
- 5) 영림사업 특별회계를 경리할 것.
- 6) 종묘, 조림, 사방사업을 계획하여 지도감독할 것.

7) 원목 및 신탄생산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할 것.

8) 북조선 임업시험장을 경영할 것.

9) 임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도감독 할 것.

10) 산림서의 신청에 의하여 보안림을 조사 지정할 것.

11) 임업에 관한 지식을 보급시키며 애림사상을 고취하기 위하여 각종 도서발간, 강연회를 개최할 것.

그 후 1947년 「농림국 임산부 신설에 관한 결정서」(1947. 5. 29, 인민위원회 결정 제36호)를 통하여 「인민경제발전과 국가산업부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목재의 계획적 생산과 아울러 각 道의 목재기업소의 사업을 일층 더 강력히 추진시키며 목재에 대한 원만한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농림국내에 임산부를 신설하여 그 안에 기획과, 업무과, 상무과를 두었다.

임산부의 관장 업무는 국영목재생산사업, 민영목재생산 및 처리, 국영생산목재의 처리, 道 목재기업소에 관한 지도감독, 매년도 사업계획 및 그 보고, 예산안 편성 등이었다.

따라서 1947년 당시에는 농림국내에 임산부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산림부, 임업부와 함께 3개의 산림관련 행정부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주요건설자재인 목재를 계획적으로 생산하여 수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46년 7월 26일자로 「목재기업소 설치에 대한 결정서」(임시 인민위원회 결정 제 51호)가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평안남·북도, 강원도 등 5개소에 목재기업소가 설치되었으며, 그 산하에 지소 및 분소가 설치되었

**북한의 임업부 조직은 상부기관은 소수정예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기관으로 갈수록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북한의 현재 임업관련 종사자 총수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 이 목재기업소는 농림국의 지시·감독 하에 사업을 실행하고 道 산림서의 계획적 지시하에 목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내부 행정조직으로는 총무과와 업무과를 두었다.

1949년 1월 24일에는 농림성령 제7호로 「조림사업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각 도 인민위원회 농림처의 산림처 직속기관으로 「조림사업소」를 두어 조림, 樹苗, 사방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였으며, 내부조직으로 계획과, 노동과, 경리과를 두었다.

1950년 1월 11일에는 「내각 산림국 산하 각 기관에 관한 규정」(내각 산림국명령 제1호)이 발표된 바, 이를 볼 때 중앙단위 산림행정 부서가 과거의 농림국 奉下의 郡單位 조직에서 농업과 분리된 독자적인 郡單位 산림행정조직으로 확대 개편되었다고 보여진다.

「내각 산림국 산하 각기판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직속기관으로 임산사업소, 제재공장, 기본건설사무소, 물자관리사무소 및 목재판매소가 설치되었으며, 함경북도 청

진시, 함경남도 함흥시, 자강도 강계시에는 그 지역의 사업중요성에 따라 도주재원이 설치되었다.

임산사업소는 평양임산사업소, 신의주임산사업소, 강계임산사업소 등 총 19개가 설치되었는데, 그 산하에 105개소의 작업소와 33개소의 부속제재공장이 설치되었다. 당시 임산사업소의 임무는 원목, 제재, 薪木, 목탄 및 임산물가공품의 생산 또는 이에대한 공급사업 및 생산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건설 제외) 등이었다.

내각 임산국 직속의 제재공장은 만포제재공장(자강도 만포군), 중암제재공장(자강도 전천군), 본궁제재공장(함경남도 함흥시), 위연제재공장(함경남도 혜산군), 성진제재공장(함경북도 성진시), 무산제재공장(함경북도 무산군) 등 총 5개소에 설치되었다.

기본건설사무소는 소관구역내의 각 임산사업소, 국직속, 제재공장, 직속수리공작소 등과의 긴밀한 연락하에 임산업발전을 위하여 인민경제계획에 의한 기본건설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총 6개가 설치되었는데, 함북 혜산군에 백두산 산림철도 기본건설사무소, 함남 혜산군에 혜산기본건설사무소, 함남 함흥시에 함흥기본건설사무소, 함북 무산에 무산기본건설사무소, 자강도 전천군에 강계기본건설사무소, 평양시에 평양기본건설사무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물자관리소는 내각 임산국 奉下機關의 생산건설자재 및 사무용품 등을 조달하는 곳으로 총 5개가 설치되었는 바, 평양시에 물자관리소, 청진시에 청진수리 공작소, 함북 무산군에 무산수리공작소, 함북 혜산군에 혜산수리공작소, 함남 함흥시에 함흥수리공작소가 설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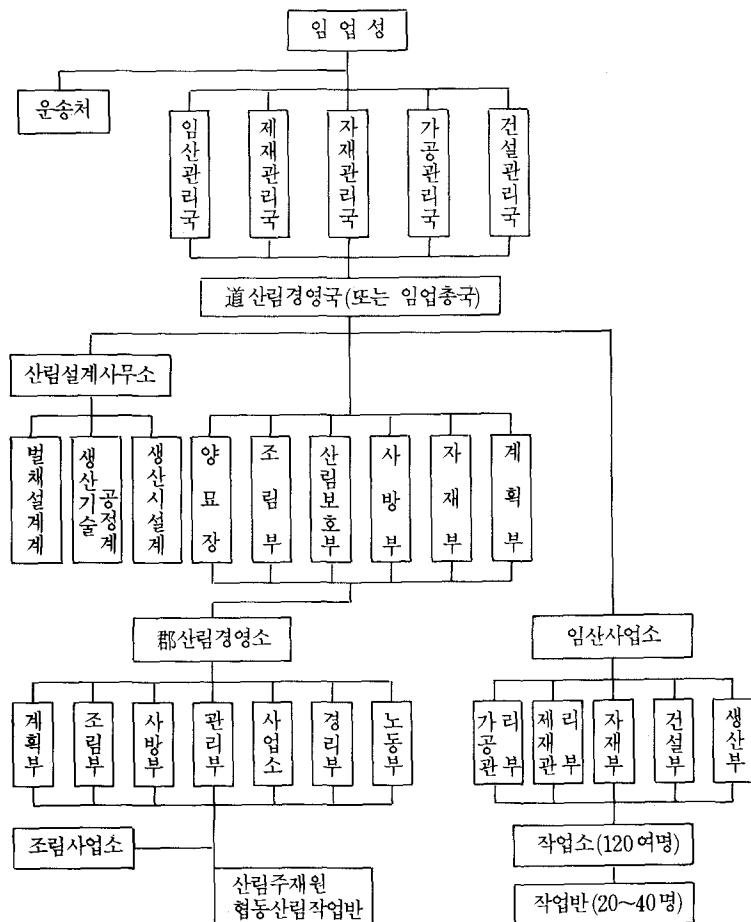
목재판매소는 임산사업소 및 국직속제재 공장에서 생산된 잔여물의 이용 및 처분에 관한 사업을 담당하는 곳으로 평양시에만 설립되었다.

그후 중앙단위 행정조직은 1958년 4월 24일자로 건재공업부 산하의 임업성으로 승격되었다가 1960년 4월 29일자로 폐지되었

으나, 같은해 12월 27일자로 다시 임업성이 설치되었다.

1964년 10월에는 道單位 산림행정조직으로 道임업총국이 신설되었고 1972년 12월에는 정무원 직속의 임업총국이 신설되면서 임업성이 다시 폐지되었다. 1960년대의 북한의 산림행정조직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1960년대 林業行政 組織圖



#### 나. 現在의 林業行政組織(1980년 以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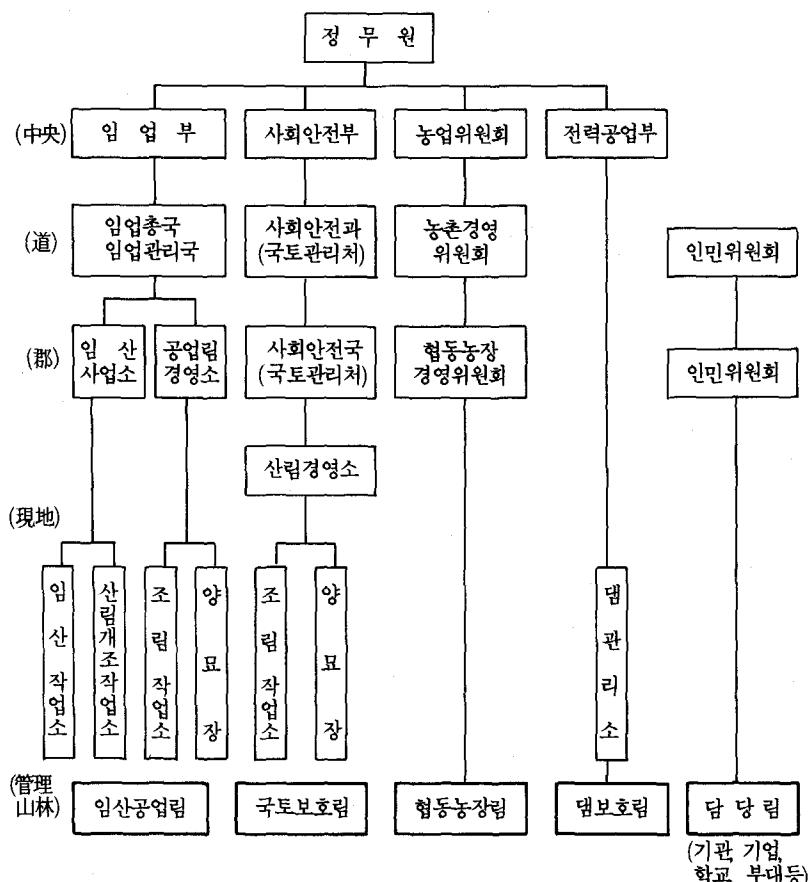
북한은 1972년 이후 1979년 말까지 중앙의 임업행정조직을 정무원 직속의 임업총국으로 유지해 오다가 1980년 1월에 정무원 산하의 임업부로 승격시켜 현재 정무원傘下의 43개 부(위원회, 국, 상사) 중의 하나로 존속되고 있다.

북한의 정무원은 주석과 중앙인민위원회의 지도하에 활동하는 최고주권기관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써 각 부(위원회) 및 지

방행정 등을 지도하고, 경제발전계획과 예산을 작성하여 그 집행대책을 세우는 업무 등을 담당한다. 정무원은 총리 1명, 부총리 10명内外, 부장(위원장), 그 밖에 필요한 성원들로 구성하고 있다.

북한의 현재 임업관련 행정조직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북한의 山林管理體系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근의 중국자료에 의하면 북한은 산림관리체계에 있어서 中央執權的 分割管理를 그 특징으로 하고

〈그림 2〉 북한의 山林管理 體系圖



있는데, 산림의 주요 기능에 따라 5종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임업부는 목재생산 위주의 임산공업팀(총 산림면적의 56%)을, 사회안전부 국토총국은 국토보호팀(총산림면적의 29%)을, 전력 공업부는 댐보호팀(총산림면적의 2%)을, 농업위원회는 협동농장팀(총산림면적의 4%)을 관리하고 있으며, 그리고 총산림면적의 9%에 해당하는 그외의 산림은 각 기관, 기업, 부대, 학교 담당팀 등으로서 각 郡인민위원회가 관리책임을 맡고 있다. 이와 같은 중앙 및 지방의 산림관리체계는〈그림 2〉와 같다.

이 그림에서 우선 임업부 이외의 산림관리조직을 살펴보면, 사회안전부 국토총국의 경우는 道에는 사회안전국 국토관리처를, 郡에는 사회안전처 국토관리과 奉下에 산림경영소를, 그리고 현지에는 조림작업소와 양묘장을 두고 국토보호팀을 관리하고 있다.

농업위원회의 경우는 道의 농촌경영위원회, 郡의 협동농장위원회를 통하여 협동농장팀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력공업부는 현지의 댐관리소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중국 자료를 토대로 하여 북한의 임업부와 奉下의 道 및 郡單位 임업행정조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업부는 임산공업팀의 관리와 아울러 영림, 임산물생산, 임산공업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와 물자제공, 생산, 운반,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사회전체의 목재소비에 대한 관리와 감독도 수행하고 있다.

임업부에는 부장 1명, 부부장 3명 등 총 120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림3〉과 같이 행정조직국, 계획국, 생산지도국 등 11個局과 후방지원처, 비서처 등 4個處로 구성되어 있다. 각 局과 处에는 많게는 10~12명, 적게는 5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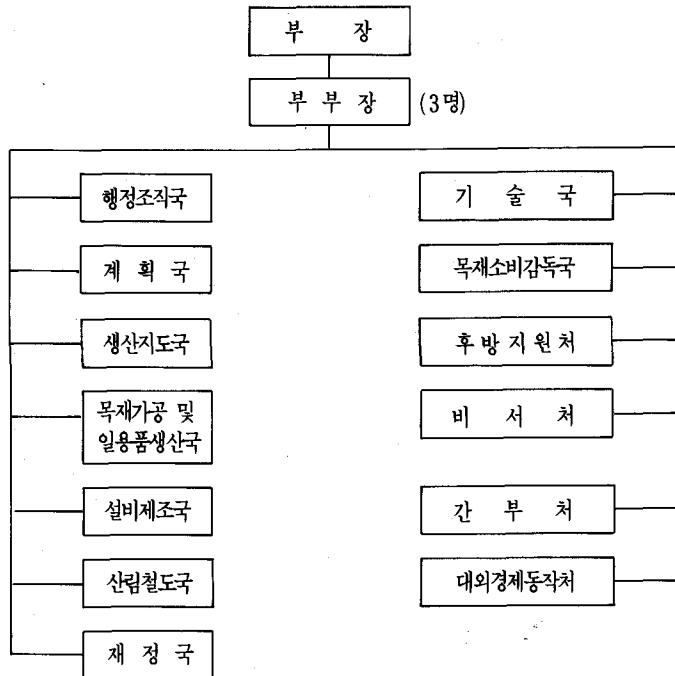
임업부 산하의 도단위 임업행정조직으로는 임업총국(양강도, 자강도) 또는 임업관리국(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 황해북도, 강원도)이 설치되어 있다. 기타 3개 시(평양시, 남포시, 청진시)와 황해남도에는 임산공업팀이 없기 때문에 임업부에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사회안전부 국토총국에서 산림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임업관리국 또는 임업총국에는 내부조직 이외의 별도 조직으로 산림설계소가 있으며, 임업총국에는 80~100명이, 임업관리국에는 40~5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다.

郡單位에는 공업팀경영소와 임산사업소가 있다. 공업팀 경영소는 공업팀의 보호, 관리, 조련 등을 담당하는데, 감독과 검사 업무 기능도 가진 기관으로서 임산사업소 등에 대한 벌채허가증의 발급, 벌채지역의 지정과 검사, 조림지 검사, 목재의 운송관리등도 수행하고 있다.

공업팀경영소에는 고등학교 林科 졸업수준의 직원 10~20명이 근무하며, 奉下에는 조림작업소와 양묘장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임산사업소는 필요한 지역에 설치되어 주로 원목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奉下에는 임산작업소와 산림개조작업소를 두고 있다.

북한의 임업부 조직은 上部機關은 소수 정예요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下部機關으로 갈수록 많은 인력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자강도 백암군에 있는 연암임산사업소의

〈그림 3〉 북한의 임업부 조직



경우 직공은 1,600명에 이르고 있으나 관리직은 80여명으로 간부의 비율이 5% 정도라고 한다. 북한의 현재 임업관련종사자 총수는 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의 임업행정에 있어서의 특징은 타분야분야와 마찬가지로 당이 주도적인 역

할을 함에 따라 임업계획의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은 중앙당 및 지방당 계획위원회에서 갖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임업부의 임무는 구조적·하위적기능, 즉 계획수립(안)의 작성, 기술적 방안제시, 기술지도등에 한정되어 있다.〈다음호에 계속〉

### 협회비 납입안내

#### 계좌번호

농 협 031-01-231375

한국독립가협회

국민은행 010-01-0616-411

한국독립가협회